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09 호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공 고

- 공고 제2013- 78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
- 공고 제2013- 804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공고 제2013- 809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난관리실태 공고 24

고 시

- 고시 제2013- 44호 도로명주소 고시 2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8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 정원	위탁예정일	취약보육
남동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남동구 인주대로 681번길 62-11	연면적 485㎡ / 53명	7월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반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3. 5. 13 ~ 6. 3.

나. 접수기간 : 2013. 5. 30 ~ 6. 3 (09:00~18:00)

다. 접수장소 :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 (1층)

라. 접수방법 : 방문 제출 (우편·인터넷·대리제출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① 위탁운영신청서(위탁운영개요서 포함)

② 위탁운영체 현황

③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 제출서류 ①, ②, ③번순으로 1권 책으로 제본(A4 규격)하여 제출(원본 1권, 사본 14권)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 기준일로 발급

4. 신청 자격 요건

【법인·단체의 경우】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나.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대학 또는 대학산학협력단)
다.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다.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단, 고용원장은 제외)
- 라.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마.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바.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사.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6. 위탁 운영 조건

-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나. 운영채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라.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바.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함.
- 사.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아.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자 선정 기준 : 【붙임 2】 참조

심 사 항 목	배 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보육사업계획,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40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운영의지 등)	35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운영체의 공신력(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8. 수탁자 선정 방법 및 통지

가.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나. 신청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발표자는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접수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 후 별도 통보

다. 1개 시설에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0조에 의거)

라.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릿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원장의 전문성(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2순위), 시설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바. 심사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9. 유의사항

가.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별도로 협약할 수 있음

나.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답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라.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 불가

마.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관련 사항 중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어린이집 종사자(고용 원장포함)이면 그 직을 사임하고 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시설팀(☎032-453-5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95점 이상 통과 ·참여하여 90점 이상 통과 ·참여중	10 7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0 8 6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합 계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1차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붙임 2]

위탁운영 신청자 제출서류

구 분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동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평가 등)				

[서식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8>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 1-1]

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요서

법인/단체/개인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소 재 지	(우편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 요 경 력		
설립일자				등 록 청		
법인현황	설립목적					
	주요사업				연간사업비	천원
	2012년 재정내역	총사업비	사업수입	외부자원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총자산규모	동산	부동산	부채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어린이집 운 영	어린이집운영		운영기간	보육아동수	원장확보	
	유	무			유	무
기타어린이집관련 수행실적						
시 설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주 요 경 력		
출연금	연간 천원					
비 고						

[서식 2]

위탁운영체현황(법인,단체용)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일자		지부/구성원	
주요사업내용			
재 산 액	【부동산 : 총 천원】 【동 산 : 총 천원】		
위탁신청동기 (취지)	여백부족 시 별지사용		

- ※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 허가증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첨부(법인의 경우)
 ※ 단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첨부(단체의 경우)
 ※ 2009년 ~ 2012년 법인(단체) 총괄 예산 결산서
 ※ 재산액은 9번 항의 재산현황과 금액일치

2. 설립목적 및 정관상 목적사업

3. 대표자 및 원장 인적사항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주 요 경 력	학 력 (학과명)
(한자) (한글)	(만 세)				

- ※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나. 원장(내정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취득년도)	주 요 경 력	학 력 (학과명)
(한자) (한글)	(만 세)				

- ※ 첨부 : 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다. 원장(내정자)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현황

시설명	직	유형	경력	종사기간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민간	1년 2개월	2007.1.1~ 2008.2.28	○○시 ○○구
○○유치원	보육교사	민간	2년	2005.1.1~ 2006.12.31	○○시 ○○구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4. 임원현황 :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취임일자	연 락 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5. 2009년 ~ 2012년 주요사업(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실적(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천원)	사업성과

나. 우수한 사항 (표창, 공모사업 수상 등)

연 월 일	내 용	시행기관	비 고
2010.2.24	표창내용 간략 표기	국무총리	

※ 표창,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

다.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2009. 1. 1 ~ 2012. 12. 31)

연 월 일	수감 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행기관

라. 기타사항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내 용

7. 법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부서

○ 조 직 도

○ 운영부서 및 직원현황

8. 재산보유 현황

가. 총 계

(단위 :원)

금융기관	평 가 액	부 채 액	비 고
계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나. 동산(현금)

(단위 :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잔 액	비 고
계			

※ 공고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다. 부동산(토지)

(단위 :원)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재산액 (면적×공시지가)	담보액 (근저당 등)	비 고
계							

※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라. 부동산(건물)

(단위 : 원)

지번	용도	면적 (㎡)	지방세 과표	평가액	담보액 (전세,근저당 등)	비고
계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연번	금융기관	부채액	비고

※ 부채증명원 등 서류 첨부

위탁운영체 현황(개인용)

1. 원장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자격증내용	최종학력 (학과명)	주요경력
(한자) (한글)	(만 세)				

※ 첨부: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 신청용)

2. 원장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경력현황

시설명	직	유형	경력	종사기간	소재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민간	1년 2개월	2007.1.1 ~ 2008.2.28	
○○유치원	보육 교사	민간	2년	2005.1.1 ~ 2006.12.31	○○시 ○○구

※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3. 위탁신청동기(취지) :

4. 재산보유 현황

가. 총 계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재산평가액	재산적용액	부채액	비고
계					
본인	동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배우자	동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은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나. 동산(현금)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잔액	재산적용액	비고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은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고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로 첨부

다. 부동산(토지)

(단위 : 원)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재산액 (면적 × 공시지가)	재산적용액	담보액 (근저당 등)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은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라. 부동산(건물)

(단위 : 원)

구분	지번	용도	면적 (㎡)	지방세 과 표	평가액	담보액 (전세, 근저당 등)	재산적용액
	계						
본인							
⋮							
배우자							
⋮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은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금액 확인 가능 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부채액	비고
본인			
⋮			
배우자			
⋮			

※ 부채증명원 등 금액 확인 서류 첨부

5. 2009년 ~ 2012년 표창, 공모사업 수상(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실적

(2009. 1. 1 ~ 2012. 12. 31)

연 월 일	내 용	시행기관	비 고
2010.2.24	표창내용 간략 표기	국무총리	
⋮	⋮	⋮	⋮

※ 표창, 공모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

[서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

재산 및 부채현황		
①건 축 물	☐ 주택 (천원) ☐ 건물 (천원) ☐ 기타 (천원)	재산총액 천원
②토 지	☐ 논 (천원) ☐ 밭 (천원) ☐ 임야 (천원) ☐ 기타 (천원)	
③금융자산	☐ 예금 (천원) ☐ 보험 (천원) ☐ 현금(천원)	
④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천원) ☐ 상가보증금(천원) ☐ 기타(천원)	
⑤자 동 차	☐ 차종(천원) ☐ 연식(천원) ☐ 배기량(천원) ☐ 평가액(천원)	
⑥부 채	☐ 주거부채(천원) ☐ 의료비부채(천원) ☐ 사업부채(천원) ☐ 일반부채(천원) ☐ 교육비부채(천원) ☐ 기타부채(천원)	부채총액 천원
⑦총 계	(재산총액 천원) - (부채총액 천원) = 천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계획		
①월 소 득	☐ 근로소득(천원) ☐ 사업소득(천원) ☐ 기타소득(천원)	소득총액 천원
②지 출 액	☐ 생계비(천원) ☐ 의료비(천원) ☐ 주거비(천원) ☐ 교육비(천원) ☐ 교통비(천원) ☐ 공과금(천원) ☐ 차량비(천원) ☐ 기 타(천원)	지출총액 천원
③경비지급	☐ 어린이집 운영비 등 경비의 발생예상액 월평균 : 천원 (세부내역작성 :)	경비총액 천원
④변제금액	☐ 부채상환금 발생예상액 월평균 : 천원 <i>※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i>	변제총액 천원
⑤경비지급 및 변제계획	<i>상세내용 기재</i>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2013 . . .

작성자

(서명)

[서식 4]

위탁운영체 평가자료 서식

원장의 보육사업 종사 경력

○ 원장의 주요 경력사항

구 분	근무처 및 기간	근무경력
보육사업 분야	○○어린이집(2007.1.1 ~ 2007.12.31)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년 개월
⋮		년 개월
유치원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아동복지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사회복지 분야		년 개월
⋮		년 개월

※ 경력인정 : 원장은 100% 인정,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종사자는 50%만 인정

※ 원장의 이력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원장 자격증 등 첨부

○ 원장의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평가인증일 - -
--	-----------------

※ 위탁운영 신청자(원장)가 어린이집 재직기간 동안 평가 인증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괄호안에 체크

※ 참여하여 통과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첨부, 참여중일 경우 참여중인 증빙서류 첨부

원장의 학력 및 전공

○ 원장의 학력 기재

원장 성명	생년월일	구 분	학교명	학과명	졸업일자
홍길동	1967.1.5	전문대학(2년)	명지대학교	보육학과	2000.1.15
		⋮	⋮	⋮	⋮

※ 구분 : 전문대학(2년), 대학교(4년), 대학원, 교육원 등 기재

※ 기재한 졸업 학교 졸업증명서는 모두 첨부

재산 현황

가. 법인/단체용

(단위 :원)

금융기관	평 가 액	부 채 액	비 고
계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나. 개인용

(단위 :원)

구 분	금융기관	재산평가액	재산적용액	부 채 액	비 고
계					
본인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배우자	동 산				
	부동산(토지)				
	부동산(건물)				

※ 재산 적용액 - 본인의 재산은 100% 적용, 배우자의 재산일 경우는 50%만 적용하여 기재

거주사항

○ 인천시 거주 여부 확인

※ 법인·단체는 설립일/등록일로 산정, 법인 설립허가증 및 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개인은 인천시 거주기간 산정,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이 나타나도록) 첨부

어린이집 운영 계획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 시설 운영 방향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목 표		
기본방향		
프로그램 내용		
기 타		

○ 사업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계	수입액	지출액	기 타
계				
주요사업만 기재				

○ 특색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 취약보육 운영계획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 2013년도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첨부

- 기본운영 방침, 보육계획(연간, 연령별, 급간식, **특수(색)사업, 취약보육** 등)
- 조직 및 인력관리계획(직원수급 및 인력관리 계획)
-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
-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계획 등

위탁운영자(대표자 또는 원장)의 보육마인드

- 시설 운영, 보육 신념 등 의견 개진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2. 9. 24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 권고사항을 반영토록 하였고, 또한 일부 미흡한 청렴요소를 개정사항에 추가함으로써 청렴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위원 구성의 연임제한 및 중복제한 규정 (안 제3조)
 - 나. 위원의 해촉 및 제척사유 명시로 도덕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문 신설 (안 제5조의2)
 - 다.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 및 방법명시(안 제9조)
4. 관계법령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3조의3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3
5.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6.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도시관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52, FAX 453-29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6.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5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지난 2012.9.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 구성의 연임제한 및 중복제한 규정 (안 제3조)
- 위원의 해촉 및 제척사유 명시로 도덕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문 신설 (안 제5조의2)
-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 및 방법 명시(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민간위원은 인천광역시 내 지자체(인천광역시, 자치구, 군)중 3곳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위촉 될 수 없다.

제5조의2(해촉 및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제7조 중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으로 한다.

제9조 조목 “(회의의 비공개)” 를 “(회의의 비공개 등)” 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국토해양부장관</u>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u>구청장</u>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2조(기능) ----- ----- . 1. <u>국토교통부장관</u> -----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있으며</u>,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u><신설></u>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u>,----- ----- . ⑤ 민간위원은 인천광역시 내 지자체(인천광역시, 자치구, 군) 중 3곳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위촉 될 수 없다.
제5조의 2(해촉 및 제척사유) ① <u><신설></u>	제5조의 2(해촉 및 제척사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이상 불참한 때.

현행	개정안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u>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u>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 ----- ----- <u>분과위원회 위원으로</u> ----- -----.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생략 ② <신설> ③ <신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809호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 2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012년 여름철 재난피해 현황】

재난유형	주택	소상공	농작물	하우스	축사
태풍1회 호우2회	49세대	23건	29ha	12동	-

가. 2012. 7. 5 ~ 7. 6.

- 호우예비특보 발표 : 해당 없음
- 호우주의보 발효 : 2012. 7. 5. 13:40
- 호우 경보 발효 : 2012. 7. 6. 23:50
- 호우 경보 해제 : 2012. 7. 6. 04:30
- 강 수 량 : 207.5mm (7월5일 76.5mm, 7월6일 131mm)
- 비상근무 : 124명
- 피해현황(총72건)
 - 주택침수 : 49세대
 - 소상공인 : 23개소
- 재난지원금: 40.5백만원

나. 2012. 8. 28(태풍 불라벤)

- 태풍주의보 발표 : 2012. 8. 28. 03:00(발효 06:00)
- 태풍 경보 발표 : 2012. 8. 28. 08:30(발효 09:00)
- 강풍주의보 발표 : 2012. 8. 29. 00:00
- 풍 속 : 9.5m/s(8.28.13:00)
- 강 수 량 : 6.5mm
- 비상근무 : 42명(주무부서)

- 피해사항
 - 비닐하우스 6,782㎡(12동)
 - 농작물 29ha(38개소)
- 재난지원금 : 26.5백만원

【2012 ~2013년 겨울철 설해피해 현황】

재난유형	주택	소상공	농작물	하우스	축사
대설 주의보 1회	-	-	-	1동	-

가. 2012 ~ 2013년 설해피해

- 2013. 2. 3 ~ 2. 4. 대설주의보
- 피해사항 : 비닐하우스 400㎡(1동)
- 재난지원금: 500,000원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재난안전과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4	4	2	1	0	2	1	1
현원	16	1	4	5	2	0	1	3	0	0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 소	설 치 장 소	비 고
지 진 가 속 도 계 측 기	1	남동구청	
자 동 강 우 량 시 스 템	4	재난종합상황실	
재 난 상 황 감 시 C C T V	6	남동배수펌프장, 수문 등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구 분	횟수	행 사 명
재난발생 대비 교육	6	▪ 재난안전교육 ▪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재난관리에방 홍보	12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매월)
재난발생 대비 훈련	2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5.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일시 : 2012.12.31(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127호)
-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 제정목적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합계	시설물			건축물								
	소계	교량 육교	옹벽 축대	소계	공공 청사	공동 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 형 건축물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 시 설	신종 업종
965	28	11	17	937	24	474	163	152	26	14	58	26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하천,하수도)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공사
- 위 치 : 남동구 일원
- 사 업 비 : 50백만원
- 규 모 : 약 12개소(48세대)
- 사업개요 : 반지하 주택 등 집수우려 지역 역류차단장치 설치

나. 차수판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수판 설치공사
- 위 치 : 남동구 일원
- 규 모 : 17개소(17세대)
- 사 업 비 : 7,000,000원
- 사업개요 : 도로침수 시 인근 주택 및 상가 출입구로 유입되는 노면수 차단

다. 관내 일원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일원

- 규 모 : 하수관 비굴착 보수(φ 300~1,200mm)
- 사업기간 : 2012. 3월~2012. 12월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개요 : 파손된 하수도 비굴착을 통한 부분보수 실시

라. 관내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일원
- 규 모 : 공공하수관 준설(L=15,000m, φ 300~1,200mm)
- 사업기간 : 2012. 3월~2012. 12월
- 사 업 비 : 60백만 원
- 사업개요 : 하수도 준설을 통한 통수능 확보

마.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남동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 계층
- 내 용 : 전기, 가스 등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445가구
- 사업기간 : 2012. 4월~2012. 6월
- 사 업 비 : 24,814천원

바.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침수, 대설, 강풍 등 취약계층
- 내 용 :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등 피해 우려세대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추진실적 : 708건 보험가입
- 지원내역 : 보험료 구비 지원 2,329천원

8.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해당 없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 2012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2012.12.31 현재(단위 : 원)

구 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비 고
	계	예치금회수	출연금 (법정적립금)	이자수입	
2012년	3,590,687,699	3,030,100,252	457,773,000	102,814,447	

10.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해당 없음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72외 2건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31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란(3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란(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가. 도로명주소는 2013. 5. 16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72	20091116	남동대로의 서쪽에 위치한 도로 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 27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7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10번길	61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110 번길 6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1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주2, 2블럭5로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번길	32	20120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5.1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10 번길 3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2를 건물번호로 부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3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8-6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0-4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9-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0-4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2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0-6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900번길	20-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20-6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3번길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8-7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6-1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2-1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5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12-4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8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31번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9	2013.05.1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